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안건 처리 특별규정

제정 2021. 01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회의” 는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명시된 각종 회의,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.

② “의장” 은 제1항에 해당하는 회의의 의장, 위원장 또는 회의 소집권자를 말한다.

③ “회의참석자” 는 제1항에 해당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과 의장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
④ “원격영상회의” 는 회의참석자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.

제3조(원격영상회의 개최)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와 인사의 내용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제외한다.

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또는 참여한 회의참석자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장 출석 발언) ① 제3조의 원격영상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론자 및 발언자를 의장이 위치한 회의장에 직접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하는 회의참석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원격영상회의 표결 방법) ① 원격영상회의에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.

1. 거수표결 :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회의참석자들과 반대하는 회의참석자들을 각각 손을 들게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
2. 호명투표 : 표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각 회의참석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회의참석자가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표결 방법
3. 이의유무표결 : 회의참석자 전원이 찬성할 때에 사용하는 약식의 표결 방법

② 제1항 각호의 표결을 진행함에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의 표결기능을 통해 회의참석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.

③ 의장이 무기명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종료 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안건에 대한 가·부를 기재하거나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하는 표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6조(녹화) ① 원격영상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경우 의장은 원격영상회의를 녹화할 수 있다.

② 원격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녹화할 수 없다. 단, 회의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녹화할 수 있다.

제7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안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6, 2021.01.13.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